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제17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유기농업자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조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 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추출 방법으로 8개소 이상 (포장물의 경우 8개 이상)에서 고르게 수거한다. 다만, 모집단의 수량이 8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수거한다.
- 다. 시료양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수량(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500g 또는 500ml 이상, 병해충관리용 자재 : 100g 또는 100ml 이상)으로 수거 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을 뜯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유통·판매 중인 자재는 채취량 상당의 포장된 제품 그대로를 시료로 채취할 수 있다.
- 라. 같은 유기농업자재를 검사의뢰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료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시료봉투에 조사원과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한다.
- 마.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보관용 시료는 시료수거기관이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까지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조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시료 수거장소에 따른 구분

가. 공시사업장

- 1) 포장된 제품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된 제품이 없는 경우 산물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2) 포장단위가 큰 포장물에서 일부를 추출하거나 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시료를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 필요한 수량 만큼 추출하고 혼합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를 사용한다.

나. 유기농업자재를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사업장

1) 개봉되지 않은 포장물을 수거한다.

2) 통신판매업체에서 시료를 구매한 경우 입회자 날인을 생략하고 시료수거확인서에 구매영수증과 사진 자료를 첨부한다.

3)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는 농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된 우려가 있는 등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훼손되지 않은 미개봉 시료에 한하여 수거한다.

3. 이 외 사항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준하여 채취한다.